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2일 도시·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년 11월 10일

나. 제 안 자: 홍재희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
도시·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11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홍재희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강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를 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

나. 협조부서: 안전관리과

다. 입법예고(2023. 11. 10. ~ 11. 14.) 결과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제정 취지

○ 공공기관,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, 대피에 관한 교육 등을 지원하여 화재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것으로.

나. 주요 제정내용

- 용어 정의(안 제2조)
 - '방연마스크', '안전교육'의 용어 정의

○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공공기관, 의료기관, 어린이집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함

○ 예산 지원(안 제4조)

-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○ 교육 지원(안 제5조)

-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

○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(안 제6조~제7조)

-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,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
- 화재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, 실천 캠페인 등을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제정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간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고,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, 그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됨.
- O 다만, 방연마스크의 사용법과 함께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- 6. 토론요지: 생략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참고

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

□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관련 조례 제정 현황

(2023. 11월 기준)

연번	쟈구	조례명	제정일 (시행일자)	기타
1	강남구	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11. 03.	
2	강북구	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2. 11. 04.	
3	관악구	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09. 25.	
4	구로구	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 05. 14.	
5	금천구	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05. 13.	
6	노원구	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2. 03. 03.	
7	도봉구	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02. 15.	
8	동작구	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9. 12. 12.	
9	마포구	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03. 25.	
10	서대문구	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에 관한 조례	2022. 03. 02.	
11	성북구	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11. 11.	
12	송파구	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 01. 02.	
13	양천구	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9. 12. 26.	
14	중랑구	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 11. 19.	

붙 임 관계 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